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2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. 9.

발의자 : 소병훈 · 강창일 · 정성호
김철민 · 전해철 · 김정우
인재근 · 이종걸 · 박남춘
전혜숙 · 김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,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.

또한 「의료법」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,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 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.

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, 재해부조금,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

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호의2.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자의 직무상요양비, 재해부조금, 장해
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: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
당 진료에 관한 자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 ^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자의 직무상요양비, 재해부조금,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: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</u>
5. ~ 9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